

대구고등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104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1043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21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변론종결 2024. 4. 9.

판결선고 2024. 5. 2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21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3. 17. 접수 제47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642,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제외하고 아래에서 1행의 “2016. 12. 6. 100,000,000원”을 “2016. 11. 30. 50,000,000원, 2016. 12. 5. 40,000,000원, 2016. 12. 6. 1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기초 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치고, 위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7,

8호증, 을 제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I”을 “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10행의 “2007. 4. 16.”을 “2004. 6. 16.”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C의 부탁으로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2016.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계약금 65,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C으로부터 상환받은 대여금 400,000,000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충당하였으며, 남은 잔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망인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 또한 피고가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배우자인 망인에게 그 소유명의만 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은 애초에 C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내지 20,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6. 3. 28. 자신 소유의 대구 달성군 L 답 1,759㎡를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4. 1.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200,000,000원 이상을 C에게 교부한 사실, ②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10.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채권양도대금 중 100,000,000원을 매도인 H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사실, ③ C은 이 사건 부동산 잔금지급일 전날인 2016. 11. 14. 망인 명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망인이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 ④ 망인은 2016. 11.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K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K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망인은 H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망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은행대출금 역시 그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망인이었던 점, ② 망인이 피고와의 혼인 중에 망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대여, 증여, 채무변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피고와의 혼인 중에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망인 명의로 대구 달서구 P아파트 Q호를 2004. 6. 16. 매수하였다가 2012. 3. 29. 매도하였고, 대구 달서구 R 외 1필지 지상 S아파트 T호를 2012. 4. 13. 매수하였다가 2017. 5. 26. 매도한 점, ④ 망인이 피고와의 혼인 중에 모든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는 혼인 중에 대구 달서구 M외 1필지 지상 N아파트 O호 및 대구 달성군 L 답 1,759㎡를 피고 단독 명의로 취득하기도 한 점, ⑤ 피고는 망인과의 혼인 중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히 망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자력 여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대한 589,266,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3. 27. U과 사이에 U이 C에게 투자금 상환으로 589,26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까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② C은 2021. 4.경 W, X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W, X에게 속아 제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W, X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U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U 명의로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투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③ C과 함께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증인 V도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W, X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C은 대구지방법원 2018카명1029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2017년식 벤츠 자동차 1대와 Y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정기적 보수만을 재산으로 기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20카명21144호 재산명시 사건에서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2017년식 벤츠 자동차 1대, Y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정기적 보수 및 예금 잔고 600,000원만을 재산으로 기재하였고, U에 대한 채권은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C의 U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 여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부녀지간으로 2015년 무렵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점, ② C은 피고가 운영하는 Y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그 외에 2017년식 벤츠 자동차 1대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스스로도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던 C이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C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인 C의 진술이나 피고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이성욱, 판사 주우현

별지